시 보

선	기관의 장
건	
람	

all ways INCHEON

제1819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0년 2월 17일 월요일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37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검단 AB14블럭) 고시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4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취소(영종 A3BL) 고시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49호 도시관리계획(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35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 결정(안) 열람·공고 ··········· 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358호 인천광역시 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공고 ·············· 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365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393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행정처분 공고 3
○ 인천계양소방서공고 제2020-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공고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1호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2호 인천광역시 시립대학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 4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3호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5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4호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 군·구
인천광역시미추홀구고시 제2020-25호『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민영주택건설 [°] 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회 인천광역시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37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검단 AB14블럭)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 AB14블럭 공공 주택(공공분양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장

- 1. 사업명: 인천 검단신도시 AB14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
- 2. 사업시행자
 -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인천도시공사 사장 박인서 금호산업(주) 대표이사 서재환 경화건설(주) 대표이사 박창완
 - 나.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20번길86-53

3. 사업개요

구 분	개 요	비고
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 AB14블럭	
나. 사업면적(m²)	74,574	
다. 대지면적(m²)	74,574	
라. 연면적(m²)	220,699.87	
마. 규모	아파트 13동, 지하2 지상 29층 1,45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4. 사 업 비: 484,265,632천원(주택도시기금 108,900,000천원)
- 5. 사업기간: 2018. 9. ~ 2021. 6.
- 6. 기타: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032-440-4758) 및 인천도시공사 공공주택 사업처 (032-260-581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인천광역시고시 제 2020-4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취소(영종 A3BL)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367호(2008. 12. 26.) 관련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舊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고시된 인천 중구 영종지구 영종 하늘도시 영종 A3BL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신청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2. 17.

인천광역시장

- 1. 사업명: 영종하늘도시 A3BL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건설공사
- 2.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
 -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승우
 - 나. 주소: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 번길 42(만수동)
- 3.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영종 A3BL
-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승인번호: 제2008-10호) 취소
 - 나. 사유: 사업주체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신청에 따름 [인천도시공사 공공주택사업처-7481(2019.12.19.)]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영종 A3BL 개발계획 변경(국민임대 주택용지 → 공공임대주택용지)
- 5. 기타
 - 가.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과 지형도면고시는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 하지 아니함
 - 나. 위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시 건축계획과(☎ 440-4758), 인천도시공사(☎ 260-5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49호

도시관리계획(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균형계획과, ☎032-440-4633), 미추홀 구청(도시계획과, ☎032-880-448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2. 17.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64번지 일원

Ⅲ. 주요 변경사항

- 공공청사(수산기술지원센터) 신설
 -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64-3번지
 - 면적: 3,000 m²

Ⅳ. 도시관리계획(문학구획정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7] 74	기정 ①	용현·학익 2-1블록	미추홀구 용현동	422 220 O	인고2012-14	
7178		도시개발	664번지 일원	422,329.0	('12.01.25)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 1) 용도지역 ·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총 계	422,329.0	100.0	
	소 계	395,814.2	93.72	
즈키키d	제1종일반주거지역	35.6	0.01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1,625.1	7.49	
	제3종일반주거지역	364,153.5	86.22	
사어키어	소 계	26,514.8	6.28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26,514.8	6.28	

-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 복합용도지구

구분	도면번호	지구명	위 치	복합용도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2	용현·학익 2-1지구	미추홀구 664-3번지	당해 용도지역의 건축물 허용용도 및 업무시설의 입지를 완화	7,617.5	인고 2019-116 ('19.5.2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교통시설
 - (1) 도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합계			1 류			2 류		3 류			
구 분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m²)	노산수 (개)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m²)
합계	기정	7	3,489	70,086.4	2	1,255	26,749.3	5	2,234	43,337.1	-	-	-
대로	기정	3	1,363	31,629.0	-	-	-	3	1,363	31,629.0	-	-	-
중로	기정	3	1,843	35,706.3	2	1,255	26,749.3	1	588	8,957.0	-	-	-
소로	기정	1	283	2,751.2	-	-	-	1	283	2,751.2	-	-	-

○ 도로 결정 조서

7 H		규 모				-1 L-	연장	-1 zi	Z 71	사용	주요	최초	wl –
구분	둥급	류별	번 호	폭원 (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대로	2	10	30~50	주간선도로	1,997	용현동 대2-14	동춘동 광2-8	일반도로		건고546호 (71. 9.13)	구역내 490m	
기정	대로	2	100	33~40	도시고속도로	17,710	용현동 광3-4	서운동 57-20	고속도로		건고704호 (67.10.20)	구역내 808m	
기정	대로	2	26	30	주간선도로	2,150	대2-10	대2-7 (학익동)	일반도로		건고75호 (75. 5.16)	구역내 65m	
기정	중로	1	1	20~23	집산도로	830	중2-1종점	소2-1종점	일반도로		인고2012-14 (12.01.25)		
기정	중로	1	2	20~23	집산도로	425	대2-10	중2-1	일반도로		인고2012-14 (12.01.25)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588	대2-10	중1-1시점	일반도로		인고2012-14 (12.01.25)		
기정	소로	2	1	9	국지도로	283	대2-10	중1-1종점	일반도로		인고2012-14 (12.01.25)		

주) 수인선 철도 일부(화물선:852m², 여객선:3,627m²)와 대2-10호선 중복결정 수인선 철도 일부(화물선:352㎡, 여객선:425㎡)와 대2-100호선 중복결정 수인선 철도 일부(화물선:115m², 여객선:131m²)와 소2-1호선 중복결정 수인선 철도 일부(여객선:188m²)와 중1-2호선 중복결정 유수지(저류시설:562m²) 일부와 중1-1호선 중복결정

(2) 주차장(변경없음)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1	주차장	노외주차장	미추홀구 용현동 665-20번지	2,540.0	인고2012-14 ('12.01.25)	

(3) 철도(변경없음)

	도면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연장		최초	
구분	구분 번호		시설의 종류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m)	면적 (㎡)	결정일	비고
기정	1	철도 (수인선)	일반철도	남동구 논현동 인천시계	중구 전동 40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중구, 동구	16,960 (590)	391,913 (10,144)	인고 2003-102 ('03.05.23)	여객선 (지하화)
기정	2	철도 (화물선)	일반철도	연수구 옥련동 45-5	미추홀구 용현동 536-3	용현정거장	11,734 (615)	423,434 (4,966)	건고427호 ('86.09.29)	화물선 (지상화)

주) 완충녹지③ 일부와 중복결정(여객선 4,060㎡) ()는 사업구역 내 편입 면적 및 연장임

나) 공간시설

(1) 광장(변경없음)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1	광장	일반광장	미추홀구 용현동 665-13번지	1,989.1	인고2012-14 ('12.01.25)	

(2) 녹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1)	녹지	완충녹지	미추홀구 용현동 666-1번지	3,170.7	인고2012-14 (12.01.25)	유수지(저류시설) 중복결정
2	녹지	완충녹지	미추홀구 용현동 664-6번지	3,737.3	인고2012-14 (12.01.25)	
3	녹지	완충녹지	미추홀구 용현동 664-7번지	34,815.6	인고2012-14 (12.01.25)	수인선(여객선) 중복결정
4	녹지	완충녹지	미추홀구 용현동 668-2번지	3,731.8	인고2012-14 (12.01.25)	
5	녹지	완충녹지	미추홀구 용현동 664-2번지	1,001.0	인고2012-14 (12.01.25)	

주) 완충녹지①은 유수지(저류시설) 일부와 중복결정 (413㎡) 완충녹지③은 수인선철도 일부와 중복결정(여객선: 4,060㎡)

(3)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1)	공원	근린공원	미추홀구 용현동 666번지 일원	29,187.6	인고2012-14 (12.01.25)	제2용정 근린공원
1	공원	어린이공원	미추홀구 용현동 664-1번지	2,572.7	인고2012-14 (12.01.25)	다솜 어린이공원
2	공원 어린이공원 미추홀구		미추홀구 용현동 664-5번지	4,578.0	인고2012-14 (12.01.25)	도담 어린이공원

다) 공공·문화 체육시설

(1) 학교(변경없음)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1	학교	초등학교	미추홀구 용현동 664-4번지	11,000.0	인고2012-14 ('12.01.25)	

(2) 공공시설(변경)

		시설의	위치		면적(㎡)			최초	비고
번호	기원정	종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11111
1	공공시설	-	미추홀구 용현동 664-4번지	미추홀구 용현동 664-3번지	11,215.6	감)3,000	8,215.6	인고2012-14 ('12.01.25)	

○ 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시설	∘ 지번 정정: 664-4 →664-3 ∘ 공공시설 면적 변경: 11,215.6㎡→8,215.6㎡(감3,000㎡)	지번 오기 정정공공청사(수산기술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면적 조정		

(3) 문화시설(변경)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비고
l	그런던모	시원정	기정	변경	41/4	14(표)	결정일	H1-72
	1)	문화시설	초등학교	-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5,724.6	인고2012-14 ('12.01.25)	

○ 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문화시설	• 시설의 종류 삭제	∘ 오기 정정 ※인고 제2016-74호(2016.4.25.)

(4) 공공청사(신설)

그ㅂ	도면번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岣	기원정	시설의 중ㅠ	ガハ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H) 44
신설	1	공공청사	수산기술지원센터	미추홀구 용현동 664-3번지	-	3,000	3,000	-	

○ 결정 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A=3,000㎡)	·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1	유수지	저류시설	미추홀구 용현동 627-614번지 일원	975.0	인코2012-14 ('12.01.25)	

주) 완충녹지①과 일부 중복결정 (413㎡), 중로 1-1호선과 일부 중복결정 (562㎡)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가)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드립비충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	비고	
도면번호	가구인호		위치	면적(㎡)	1177
-	G2	273,934.3	미추홀구 용현동 664번지	197,343.6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드러비중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	비고	
도면번호	가구인호		위치	면적(m²)	비고
-	G3	31,974.2	미추홀구 용현동 665번지	971.3	

다) 근린상업용지(변경없음)

드립니 중	기그비·	기그며게(~;)	필지		H) T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면적(㎡)	비고
			용현동 665-1번지	428.3	
			용현동 665-2번지	298.4	
			용현동 665-3번지	350.8	
			용현동 665-4번지	250.0	
			용현동 665-5번지	250.0	
			용현동 665-6번지	268.2	
		21.074.0	용현동 665-7번지	276.4	
			용현동 665-8번지	413.0	
	G3		용현동 665-9번지	510.4	
_	Go	31,974.2	용현동 665-10번지	624.8	
			용현동 665-11번지	761.1	
			용현동 665-12번지	2,137.9	
			용현동 665-13번지	1,207.8	
			용현동 665-14번지	862.4	
			용현동 665-15번지	5,252.4	
			용현동 665-16번지	2,797.9	
			용현동 665-17번지	9,560.0	
			용현동 665-18번지	201.0	도로

※ 1.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

- ·최소 개발규모 250㎡이상으로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 공동개발이 가능
- ∘형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허(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

- 부정형(요철형, 과소형 등)필지 발생시
- 세장비(단변과 장변의 비)가 1:3이상이 되는 경우
- 차량진·출입 불가능 필지가 발생하는 경우
- 2. 건축법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합벽건축 가능
- 3. 용현동 665-15, 16, 17번지는 필지를 분할하려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한다.

라) 복합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		비고
포인턴호	가구인호	/1十七年(皿)	위치	면적(㎡)	山北
-	G2	273,934.3	용현동 664-3번지	7,617.5	

(마) 기반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고		
工程包之	가기원모	(m²)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미추홀구 용현동 666-1번지	3,170.7	완1	완1	
_	G1	32,358.3	미추홀구 용현동 666번지	29,187.6	근	근	
			미추홀구 용현동 666-1번지 일원	(975.0)	유	유	
			미추홀구 용현동 664-4번지	11,000.0	학	학	
			미추홀구 용현동 664-3번지	3,000.0	공공시설1	공공청사	
		273,934.3	070 004 0	미추홀구 용현동 664-3번지	8,215.6	공공시설2	공공시설
	CO			미추홀구 용현동 664-1번지	2,572.7	어1	어1
_	G2		미추홀구 용현동 666-1번지	4,578.0	어2	어2	
				미추홀구 용현동 664-6번지	3,737.3	완2	완2
			미추홀구 용현동 664-2번지	1,001.0	완5	완5	
			미추홀구 용현동 664-7번지	34,815.6	완3	완3	
	C2	31,974.2	미추홀구 용현동 665-20번지	2,540.0	주	주	
_	G3	31,974.2	미추홀구 용현동 665-13번지	1,989.1	광	광	
	G4		미추홀구 용현동 668-2번지	3,731.8	완4	완4	
_		9,919.5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5,724.6	문	문	
			미추홀구 용현동 668-1번지	463.1	펌	펌	

주) ()는 지하시설의 면적임.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 공공시설1 → 공공청사- 공공시설2 → 공공시설	·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그 부대· 복리시설				
		工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율	•13% 이하(부대복리시설 등 제외)				
		용	적률	•기준용적률: 220% 이하 •허용용적률: 250% 이하				
	G2 (용현동 664) 배 형	五	0]	•최고높이 40층 이하 •소2-1호선변은 25층 이하 •소음저감계획 변경시, 소음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용현동 664)				배	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방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간의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 ●상업지역과 근린공원이 연계되도록 3~5m 보행축 확보
							형	태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건축물의 외관은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 건물 외벽의 색채 구성은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여 적용 		
			건	축선	•중1-1호선변 6m 이격, 중1-2호선변 13m 이격 •수인선철도 좌측 완충녹지 인접부지는 10m 이격 (단, 수인선(화물선) 철도 미운영시 4m이격) •소2-1호선변 직각배치시 25m, 평행배치시 40m 이격 •소음저감계획 변경시, 소음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대시설, 제9호의 복리시설은 허용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G3 (용현동 665)	여 내	용 청 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카목 중 학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타목 중 독서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하목 중 금융업소, 사무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라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가목, 나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가목 공공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나목 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출판사, 신문사			
		건폐율		•50% 이하			
-		<u>a</u>	적률	•300% া ই			
					높	이	-
						배	치
				형	태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 록 함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건축물의 외벽면, 지붕등의 색채는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건·	축선	-			

다) 근린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 근린상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외의 용도				
		용도	불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시설(결정도 참고)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 근린상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	폐율	•70% 이하				
	G3 (용현동 665-1~18)				<u>.</u>		•700% 이하 ※ 공동주택과 주거용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적용	
		높	0]	-				
-		(용현동	(용현동	(용현동	(용현동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건축물의 전면방향을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형성과 심미성을 강조한 건축물의 형태로 계획
								형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건축물의 외벽면, 지붕등의 색채는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간판의 색 자체는 제한하지 않되 동일 입면에 보이는 간판간의 전체적인 색조를 건물의 주조색과 조화되도록 통일하고 고채 도의 강조색은 가능한 제거하거나 최소화 		
							건축	축선

라) 복합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フ	분	계 획 내 용						
子に孔子	71 4		L	/া ৰ গা ত						
		용무	허용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수리점,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동주택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피	태 율	•50% ০] চী-						
		<u>.</u>		•300% 이하						
	G2 - (용현동 664-3)	노	٥]	•50m 이하						
-		(용현동	(용현동	(용현동	(용현동	(용현동	(용현동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건축물의 전면방향을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형성과 심미성을 강조한 건축물의 형태로 계획
		형	태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보행자도로와 접한 건축물의 경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가능한 차이가 없도록 하여 보행자의 접근성을 제고 •1층 전면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설치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건축물의 외벽면, 지붕등의 색채는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간판의 색 자체는 제한하지 않되 동일 입면에 보이는 간판간의 전체적인 색조를 건물의 주조색과 조화되도록 통일하고 고채 도의 강조색은 가능한 제거하거나 최소화 					
		건축	축선	•중로 1-2호선, 중로 2-1호선 변 15층 이상 건축시 3m, 15층 미만 건축시 2m 이격						

주1)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의거한 공공주택이며, 세대당 전용면적은 60㎡이하에 한함. 주2) 위치의 ()는 획지 번호임.

마) 기반시설용지(변경)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 ,		7, 7, 7, 0	
		용 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및 그 부속용도)	
		도 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00	높 ㅇ	-	
-	G2 (용현동 664-4)	배 ᅔ	•개별 건축계획을 수용 •중로 1-1호선변 직각배치(7m이격)	
		형 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색 치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건축물의 외벽면, 지붕등의 색채는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건축선	•소음저감계획 변경시, 소음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용 당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০) ঠ	
		용적률	- •250% 이하	
	G4	높 ㅇ	-	
-	(용현동 667)	배 ᅔ	•개별 건축계획을 수용	
		형 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	색 ᅔ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건축물의 외벽면, 지붕등의 색채는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건축선	-	
		, 허-		
		용 권		
		불		
		건폐율		
-	G3 (용현동 665-20)	용적률		
		높 o		
		배 ^첫 형 E	•외병재료는 거묵저며과 측호며이 동익하거나 조하를 이루도로 한	
		색 ㅊ		
		건축선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율	•50% 이하
		용	적률	•300% 이하
		높	(ه	•20m 이하
_	- G2 (용현동 664-3)		치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건축물의 전면방향을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형성과 심미성을 강조한 건축물의 형태로 계획
		쳥	태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보행자도로와 접한 건축물의 경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가능한 차이가 없도록 하여 보행자의 접근성을 제고 •1층 전면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설치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건축물의 외벽면, 지붕등의 색채는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간판의 색 자체는 제한하지 않되 동일 입면에 보이는 간판간의 전체적인 색조를 건물의 주조색과 조화되도록 통일하고 고채도의 강조색은 가능한 제거하거나 최소화
		건	축선	•중로 1-2호선, 중로 2-1호선변 15층 이상 건축시 3m, 15층 미만 건축시 2m 이격

주) 위치의 ()는 지번 번호임.

[변경]

제1819호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및 그 부속용도)	
		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율	•50% 이하	
		용적		•300% 이하	
	G2 높		(ه	-	
_	(용현동 664-4)			치	•개별 건축계획을 수용 •중로 1-1호선변 직각배치(7m이격)
		형	태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건축물의 외벽면, 지붕등의 색채는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건	축선	•소음저감계획 변경시, 소음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ſ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ユ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율	•60% 이하
				적률	•250% 이하
		G4	높		-
	_	(용현동 667)	배	치	•개별 건축계획을 수용
			형	태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건축물의 외벽면, 지붕등의 색채는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건.	축선	-
			용	허용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및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오	권장	•노외 자주식 주차장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폐율	•90% 이하
		G3		적률	•700% 이하
	-	(용현동 665-20)	높		-
			배	치	- 이번게그는 기무기머기 초층머지 도이된기나 그친근 시란드린 첫
			형	태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간선가로 변에는 도시미관을 고려한 외장계획
			색	채	-
			건.	축선	-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	•20m 이하
		G2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건축물의 전면방향을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형성과 심미성을 강조한 건축물의 형태로 계획
		G2 (용현동 664-3, 공공시설)	형	태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보행자도로와 접한 건축물의 경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가능한 차이가 없도록 하여 보행자의 접근성을 제고 •1층 전면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설치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건축물의 외벽면, 지붕등의 색채는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간판의 색 자체는 제한하지 않되 동일 입면에 보이는 간판간의 전체적인 색조를 건물의 주조색과 조화되도록 통일하고 고채도의 강조색은 기능한 제거하거나 최소화
			건-	축선	•중로 1-2호선, 중로 2-1호선변 15층 이상 건축시 3m, 15층 미만 건축시 2m 이격

	용	지정	•공공청사
	도	불허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율	•50% 이하
	용	-적률	•300% 이하
	높	- 0]	•20m 이하
G2	배	え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건축물의 전면방향을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형성과 심미성을 강조한 건축물의 형태로 계획
(용현동 664-3, 공공청사)	청	태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보행자도로와 접한 건축물의 경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가능한 차이가 없도록 하여 보행자의 접근성을 제고 •1층 전면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설치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건축물의 외벽면, 지붕등의 색채는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간판의 색 자체는 제한하지 않되 동일 입면에 보이는 간판간의 전체적인 색조를 건물의 주조색과 조화되도록 통일하고 고채도의 강조색은 가능한 제거하거나 최소화
	건	축선	•중로 1-2호선, 중로 2-1호선변 15층 이상 건축시 3m, 15층 미만 건축시 2m 이격

주) 위치의 ()는 지번 번호임.

○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청사 용도 지정	· 수산기술지원센터 공공청사 용도 지정

3) 용적률 인센티브의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방법	완화용적률
	① 주차장 지하배치	•주차장의 95% 이상 지하 배치	10%
공동주택		•건폐율 12% 이하로 계획시	5%
ठ ठ न च	② 건폐율	•건폐율 11% 이하로 계획시	7%
		•건폐율 10% 이하로 계획시	10%
	•생울타리 및 투시형 담장	-	1.5%
	•투수성 바닥처리	-	1.5%
	• 벽면녹화	-	1.5%
	•비오톱 조성(생물서식공간)	-	2.0%
③ 생태환경	•우수재활용시설 설치	-	2.0%
조성계획 등	•단지내외 자전거도로 설치	-	1.5%
	•규정외의 주민공동시설(도서관 등) 설치 이용시	-	시설별 2%
	•기타 규정 외의 추가 계획시	-	2% 이내
	합계	•10% 이내 적용	
④에너지절약	•중수도시설 설치	-	기존 용적률의 5%이내
⑤공공시설	•공공용지 조성 및 기부채납 (추가 부담시, 공개공지 또는 공 개공간을 의무면적 초과하여 설치 한 경우)	기준용적률 + [(당해 용지에 적용되는 허용용적률 ×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공시설용지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이내	기존 용적률의 10%이내

- 주 1) 공동주택용지 최대 허용용적률은 250%를 초과할 수 없음.
 - 2) 제3항의 인센티브 총합은 10%이내임.
 - 3) 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은 건폐율 산정대상에서 제외.
 - 4) 공공용지의 추가 부담면적은 토지 지상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중복결정(지상 및 지하에 공공시설 복수설치) 면적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
 - 5) 위의 사항은 공동주택용지만 적용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대지내 공 지	-	
	G2	대지내 조 경	•소2-1호선변 15m이상의 녹지대 조성	
_	(용현동664)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대지내 공 지	_	
_	G3	대지내 조 경	-	
	(용현동665)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대지내 공 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는 가로 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공간을 확보토록 권장	
_	G3 (용현동 665-1~18)	대지내 조 경	-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G2 (용현동664-3,4)	대지내 공 지	_	
_	G3	대지내 조 경	-	
	(용현동665-20) G4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용현동667)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대지내 공 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는 가로 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공간을 확보토록 권장	
_	G2 (용현동 664-3)	대지내 조 경	-	복합 시설
	(0 10 00 1 -0)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용지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주) 위치의 ()는 지번 번호임.

V.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69호(2019. 12. 23.)로 변경·결정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국제업무단지 G-Tower 퇴근시 도로정체 해소를 위한 출차차로 신설로 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을 반영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가. 개 요: 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7.	분			면 적 (m²)		구성비	(%)	비고
	구	亡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비끄
주 타	택 건	설 용	지	768,547.0	-	768,547.0	13.2	13.2	
	공	동 주	택	768,547.0	-	768,547.0	13.2	13.2	
근 린	생 활	시설 용	ㅏ 지	1,206,902.1	-	1,206,902.1	20.8	20.8	
	근 린	생 활 시	·] 설	141,507.4	-	141,507.4	2.4	2.4	
	주	차	장	34,600.4	-	34,600.4	0.6	0.6	
	학 교	(유 치	원)	1,700.0	-	1,700.0	0.05	0.05	
	의	료 시	설	80,719.3	-	80,719.3	1.4	1.4	
	체	육 시	설	946,875.0	-	946,875.0	16.3	16.3	
	주	유	소	1,500.0	-	1,500.0	0.05	0.05	
일	반	상	업	87,453.7	-	87,453.7	1.5	1.5	
국	제	업	무	770,087.9	-	770,087.9	13.3	13.3	
주	상	복	합	433,618.5	-	433,618.5	7.5	7.5	
공 급	공 시	설 용	지	2,536,985.2	-	2,536,985.2	43.7	43.7	
	도		로	1,212,507.3	중) 102.8	1,212,610.1	20.9	20.9	변경
	도		로	1,209,552.8	중) 102.8	1,209,655.6	20.8	20.8	변경
	보	행 자 도	로	2,954.5	_	2,954.5	0.1	0.1	
	공		원	689,254.3	_	689,254.3	11.9	11.9	
	녹		지	117,193.9	_	117,193.9	2.0	2.0	
	복 합	환 승 선	<u> </u> 터	31,697.5	_	31,697.5	0.5	0.5	
	주	차	장	6,261.9	-	6,261.9	0.1	0.1	
	학		교	314,891.8	-	314,891.8	5.4	5.4	
	공	공 청	사	22,199.2	감) 102.8	22,096.4	0.4	0.4	변경
	문	화 시	설	105,257.4	-	105,257.4	1.8	1.8	
	복	지 시	설	12,008.3	-	12,008.3	0.2	0.2	
	공 급	처리시	·] 설	15,422.1	-	15,422.1	0.3	0.3	
	7]	타 용	지	10,291.5	-	10,291.5	0.2	0.2	
합			계	5,803,594.4	-	5,803,594.4	100.0	100.0	

※ 기정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67호(2019. 12. 23.)

-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변경 없음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작성된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1>
-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의 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없음
- 9.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44)에 갖추어 놓음
 - 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다.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고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변경

○ 도로 총괄표 (변경)

				합7	레			1 គ	Ť		2류	<u> </u>		3류	-		기타	
구분		노	연장	연작(m²)		노	연장	면적	노	연장	면접	H:	연장	면적	1	면적(m²)		
		노 선 수	연장 (m)	기정	변경	변경후	노선수	연장 (m)	(m²)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보전수	연장 (m)	(m²)	기정	변경	변경 후
합7	계	74	40,881	1,199,967.3	중)102.8	1,200,070.1	58	31,826	862,886.1	6	2,996	125,059.7	8	5,907	175,801	36,220.5	중)102.8	36,323.3
	계	73	40,733	1,160,792.3	-	1,160,792.3	57	31,678	859,931.6	6	2,996	125,059.7	8	5,907	175,801	-	-	-
일반	광 로	4	6,588	349,587.0	-	349,587.0	1	2,129	149,030.0	2	2,198	109,900	1	2,261	90,657	-	-	-
도로	대 로	23	11,999	379,219.7	-	379,219.7	15	8,277	290,886.0	1	76	3,189.7	7	3,646	85,144	-	1	-
	중 로	46	22,146	431,985.6	-	431,985.6	42	21,348	420,015.6	4	798	11,970	-	-	-	-	-	-
특수 도로	중 로	1	148	2,954.5	-	2,954.5	1	148	2,954.5	-	-	-	-	-	-	-	-	-
7]1	타	-	-	36,220.5	중)102.8	36,323.3	-	-	-	-	-	_	-	-	-	36,220.5	중)102.8	36,323.3

※ 기타는 가각 및 가감속차로, Bus Bay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π	모			여자			사용	スゥ	코) 호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중점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대로	1	9	35	주간선 도로	1,480 (5,123)	광로2-8	광로1-2	일반도로	광로3-29	1976.3.27	
변경	대로	1	9	35	주간선 도로	1,480 (5,123)	광로2-8	광로1-2	일반도로	광로3-29	1976.3.27	출차차로 확보

※ ()은 도로전체 연장임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9	대로1-9	노선 선형 변경폭원 및 연장은 변경 없음출차차로 확보	• G-Tower 퇴근시 도로정체 해소를 위한 출차차로 신설

2) 주차장: 변경 없음

나. 도시공간시설: 변경 없음

다. 유통 공급시설: 변경 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1) 공공청사: 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초	비고
11	변호 변호	기설정	세분	FI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포
변경	2	공공청사	공공청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1 대	8,599.8	감) 102.8	8,497.0	2005.11.25	우체국

■ 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공공청사	● 면적변경 8,599.8㎡ → 8,497.0㎡ 감) 102.8㎡	• 출차차로 신설(대로1-9호선)로 인한 공공청사 면적 축소

2) 학교: 변경 없음

3) 사회복지시설: 변경 없음

마. 환경기초시설: 변경 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변경 없음

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없음

3) 국제업무용지: 변경 없음

4) 상업시설용지: 변경 없음

5) 주상복합용지: 변경 없음

6) 체육시설용지: 변경 없음

7) 기타시설용지: 변경 없음

8) 공원: 변경 없음

9) 녹지: 변경 없음

10) 주차장: 변경 없음

11) 학교: 변경 없음

12) 공공청사: 변경

도면	블록		면 적(㎡)			-11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 적(m²)		비고
		7178	£1.0	12/0 T	71/1	기정	변경	변경후	
2	E1	8,599.8	감) 102.8	8,497.0	2	8,599.8	감) 102.8	8,497.0	

13) 사회복지시설: 변경 없음

14) 환경기초시설, 유통 및 공급설비: 변경 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행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35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 결정(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7.

인 천 광 역 시 장

-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 결정(안) 주요 내용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산170-1 일원
 - 결정 내용
 -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위 치	,	면 적(r	n²)	최 초	비고
1 1	번호	기 된 6	71 71	기 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117
신설	_	장사시설	강화군 내기면 황청리 산 170-1번지 일원	_	증)65,872	65,872	-	-

-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결 정 사 유
-	장사시설	·신설 - 면적 : 65,872㎡	· 기존 황청리 공설묘지 재정비를 통하여 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 · 장사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향후 예상되는 자연장 수요를 충족하고, 경관개선을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기설: 장사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 032-440-1703)
- 인천광역시 강화군청(복지정책과, ☎ 032-930-3316)
-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358호

인천광역시 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공고

「문화재보호법」제70조 및「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5조에 따라 인천 광역시 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 대상을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2020년 2월 17일 인천광역시장

1. 공고명 : 인천광역시 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연번	종류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관리자)
1	유형 문화재	백자 청화 인천부사 이성곤 묘지 (白磁 靑畵 仁川府使 李成坤 墓誌)	1건 6점	인천광역시장 (시립박물관장)

나.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시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시보 공고일로 부터 30일

5. 연락처 :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가. 전화(송)번호 : (T)032-440-4032 / (F)032-440-8693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1층 문화재과

다. E-mail : yoosd99@korea.kr

[붙임] 지정예고 사유 1부.

붙임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대상

ㅇ 명 청 : 백자 청화 인천부사 이성곤 묘지 (白磁 靑畵 仁川府使 李成坤 墓誌)

ㅇ 소유자(관리자) : 인천광역시장(인천시립박물관)

ㅇ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인천광역시립박물관

ㅇ 형 태 : 장방형 청화백자 묘지

ㅇ 수 량: 1건 6점

- 제1장 : 가로 15.3m, 세로 19.3cm, 두께 1.3cm

- 제2~6장 : 가로 16.2cm, 세로 21.8cm, 두께 1.6cm

ㅇ 제작연대 : 조선시대 (1761년)

ㅇ 소장방법 : 2003년 공모에 의해 구입

ㅇ 지정사유

- 조선시대 묘지석은 주자가례 장례문화 중 마지막 과정의 장례도구로 지상에 세우는 묘비, 묘표와 함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묘지석은 인천 부사를 지낸 인물의 유물로 인천 지역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 이성곤 묘지석은 조선시대 주자가례 문화가 토착화된 18세기(1761, 영조37) 중엽의 절대 연대를 기록한 작품으로 당시 사대부들의 삶과 직업관, 세계관 등 생활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
- 국가나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청화백자 묘지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이성곤의 청화백자 묘지는 인천지역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예 이며 인천부사의 묘지로서 역사적,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높다는 점 에서 인천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음.

<참고사진>



백자 청화 인천부사 이성곤 묘지, 인천시립박물관, 1761년(영조 37)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365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 된 사 업	등록일
제2020-0- 인천광역시 -5	코드포인천	홍대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56, 2007호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BT센터)	○ 인천시민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지식/서비스 관련 플랫폼 개발, 운영, 관리, 디자인, 기술관련 스터디를 위한 모임 개설 및 지원	′20.2.1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393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행정처분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제4항의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기준 미신고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년 2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장

- 1. 행정처분일 : 2020. 2. 13.
- 2. 행정처분대상 및 내용

등록 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행정처분 원인	행정처분내용
330	㈜아세아트렌스	김**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42, 507호 (신흥동3가, 풍천빌딩)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9.6.27.)	3차위반사업정지 60일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 배상책임보험가입)미달
-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5. 유의사항
 - 행정처분 대상업체는 등록기준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 4. 13. 까지 보완조치가 없을 시에는 4차 위반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것입니다.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해양항만과(032-440-4843)로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계양소방서공고 제2020-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02월 14일

인 천 계 양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영 업 소 재 지	대표자	등 록 업 종
인천계양 제2020-01호 (2020.02.14.)	주식회사 올바른소방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82, 3층 313호	한양진	소방시설관리업

끝.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1호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별지 1호~6호 서식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불필요한 기재사항 등 정비(별지1호, 별지2호, 별지4-1호)
- 나. 연도 및 내용 수정, 대학생 삽입 등(별지1호, 별지2호, 별지3호, 별지4호, 별지5호, 별지6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시민정책담당관, 전화: 032-440-2199, FAX: 032-440-8722)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 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1호, 별지2호, 별지3호, 별지4-1호, 별지4호, 별지5호, 별지6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학년도 장학금신청서

- 1. 보호자 인적사항
- ㅇ주소
- ○성명 (한글)

(한자)

(남, 여)

- ㅇ생년월일
- ○지도자 경력: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ㅇ공적개요

-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교명
- 0 학년

학과

○성명 (한글)

(한자)

(남, 여)

- o생년월일
- ○보호자와의 관계
- ㅇ성적 또는 특기
- ○장학생구분: 유공자·우등·특기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새마을장학금 혜택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 1.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 2. 주민등록등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인) (서명)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회장 귀하

- ㈜ : ①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 ② 성적은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별지 제2호 서식〕

장학생 추천서

학교 학년 학과 1. 소속

2. 성명 (한글) (한자) (남, 여)

년 월 일 3. 생년월일

4. 주소

이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성 적	기 타
1. 평균 점	1. 학습태도
2. 석차	
3.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여부	

20 년 월 일

○○○○○○ 학교장 성명 (직인)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1. 소속 학교 학년 학과

2. 성명 (한글) (한자) (남, 여)

3. 생년월일 년 월 일

4. 주소

본인은 20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보호자와 함께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장학생 성명 (인) (서명)

보호자 성명 (인) (서명)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회장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별지 제4-1호 서식]

○○○○학년도 새마을장학생 명단

	장 학	생				보호	자	구청장
성명	학교명	학년	연령	성적 또는 특기	관계	성명	지도자 경 력	의견 (추천 순위)

「별지 제4호 서식〕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추천서

1.추천인원: 명(남 , 여)

구분	계	고교생	대학생
계			
유 공 자 장 학 생			
우 등 장 학 생			
특 기 장 학 생			

※()안은 여학생임

2. 장학생선발 예정인원 및 소요액

○새마을지도자: 명(남 여

)

○선발예정인원: 명<u>(7%)</u>

구	분	계	고교생		대학생	
인	원		(%)	(%)
그	액					
1 인 당	장 학 금		()	()

※ ()안은 연간 1인당 등록금액

3. 예산확보액: 천원

상기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 1. 장학생명단 1부

2. 장학생추천서 1부. 끝.

(인) ○○○○구지회장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장학금지급신청서

소 속 성 명

학교 (남, 여)

학년 학과

생년월일

본인은 20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서명)

보호자 주소

성명

(인)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회장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 (과)

위학생은 인천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ㅇㅇ학년도 새마을○○○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함.

20 년 월 일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인천광역시지부

직 인

회장 🔘 🔾 🔾

키러버러 바레기치

완단법당 발췌사양					
	□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 ^{별도첨부} "				
관련법령	□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별도첨부"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제2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09-23>

- 제3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9-23>
 -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년 성적으로 갈음한다.
 - 가. 고등학생은 직전 학년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대학생은 직전 학년 학과성적이 평균평점'C'학점 이상인 사람
 -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생을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19-09-23>>
- 제4조 (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천광역시군·구지회장(이하 "군·구지회장" 이라 한다)과 군수·구청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천광역시지부 회장(이하 "시지부회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군·구지회장은 군·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23>
- 제5조 (선발) 시지부회장이 군·구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발하여 매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23>
 - 1.「상훈법」에 의한 높은 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높은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동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분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 통
 -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지회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구 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한 후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인천광역시지부 회장(이하 "시지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 (선발) ① 시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후 시 새마을운 동협의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 동중앙협의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시지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제5호 서식) 및 서약서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구지회장은 장학생에게 시지부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2호

「인천광역시 시립대학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17.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시립대학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인천대학교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칙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시립대학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교육협력담당관, 전화:032-440-2172, FAX:032-440-8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인천광역시 규칙 제 호

인천대학교 시립대학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폐지안

인천광역시 시립대학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 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3호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 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17.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칙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교육협력담당관, 전화:032-440-2172, FAX:032-440-8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인천광역시 규칙 제 호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인천광역시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 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4호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2. 17.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3117호)의 개정 (2019. 7. 17.) 및 시행(2019. 8. 5.)에 따라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의 소관부서가 변경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부서명칭과 관련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간행물발간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대변인"에서 "소통기획담당관" 으로 변경(안 제6조)
- 나. 별지 제1호 서식 간행물발간 심의요구서의 참조 부서를 "대변인" 에서 "소통기획담당관"으로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소통기획담당관실, 전화: 032-440-3044, 팩스: 032-440-86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변인"을 "소통기획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	2
고, 부위원장은 <u>대변인</u> 으로 하	<u>소통기획담당관</u>
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회계담당관, 아동	
청소년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인천광역시의	
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홍	
보물 제작 관련 민간전문가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간행물 발간 심의 요구서 (제10조제1항관련)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심의위원장

참 조:소통기획담당관

간 행 물 명					
발 간 목 적					
	•지질 :		• 색도 :		
발 간 개 요	•규격:		•수량 :		
	·면수 :		·소요예산 : (1부당원가 :	천원 원)	
발 간 내 용					
-111 -11	·광고게재 :	면,	미게재 :	면	
광 고 게 재	·광고료감면여부 :				
	·유상보급 :	부	·무상보급 :	부	
보급계획	•보급시기 :				
	・보급대상 :				
판매장소지정	·직접판매장소(구체적 장소기재):				
첨부 1. 간행물 발간계획 13부. 2. 소요예산산출명세서 13부.					

발신 : ○ ○ ○ 장 (서명 또는 직인)

군・구

인천광역시미추홀구고시 제2020-25호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454-4번지 일원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의 민영주택건설사업변경(5차)승인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 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2.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1. 사업명칭: 인천 주안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
- 2. 사업주체: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 3. 사업시행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454-4번지 일원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

나. 대지면적: 20,386 m²

다. 규 모: 지하8층~지상44층, 공동주택 86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의료시설, 판매·문화및집회시설·제1,2종근린생활시설

- 4.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 2020. 2. 11.
- 5. 주요변경사항
 - 사업주체: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상호변경)
 - 면적변경: 279,145.8644 m²→279,569.7788 m²
 - 상업시설 및 의료시설 일부평면 변경
- 6. 사업시행기간: 사업계획승인일 ~ 2022. 7. 31.
- 7. 의제처리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